#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가.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,

나. 「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처리하는데 불편이 있어 처리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2조 관련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9245(2018. 11. 15.)〕
라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67035(2018. 12. 4.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1. 8. ~ 2018. 11. 28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3조제4항”을 “법 제14조제5항”으로 한다.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

(단위: 원)

| 품 명 | 규 격 | 수수료 | 품 명 | 규 격 | 수수료 | 품 명 | 규 격 | 수수료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가스레인지 | 모든 규격 | 2,000 | 세 탁 기 | 모든 규격 | 4,000 | 전 기 밥솥 | 모든 규격 | 2,000 |
| 가스레이지대 | 모든 규격 | 2,000 | 쇼 파 | 3인 이상 | 5,000 | 전기스토브 | 모든 규격 | 2,000 |
| 가스 오븐 | 높이1m미만 | 2,000 | | 2인 이하 | 2,000 | 전자레인지 | 모든 규격 | 2,000 |
| 레 인 지 | 높이1m이상 | 4,000 | 수 도 호 스 | 10 m 당 | 2,000 | 전 자 올겐 | 모든 규격 | 4,000 |
| 가 습 기 | 모든 규격 | 2,000 | 식탁 (테이블) | 6인용미만 | 4,000 | 전 화 기 | 모든 규격 | 1,000 |
| 공기청정기 | 모든 규격 | 2,000 | | 6인용이상 | 5,000 | 청 소 기 | 모든 규격 | 2,000 |
| 교 자 상 | 모든 규격 | 2,000 | 신 발 장 | 모든 규격 | 2,000 | 책 꽂 이 | 모든 규격 | 2,000 |
| 나무 묶음 | 직경 40cm | 2,000 | 쌀 통 | 모든 규격 | 2,000 | 책 상 | 양수 책상 | 7,000 |
| 냉 장 고 | 500ℓ이상 | 8,000 | 씽 크 대 | 60cm1짝당 | 3,000 | | 편수 책상 | 4,000 |
| | 300ℓ이상 | 6,000 | 액 자 | 소 형 | 1,000 | 침대매트리스 | 1 인 용 | 10,000 |
| | 300ℓ미만 | 4,000 | | 대 형 | 2,000 | | 2 인 용 | 15,000 |
| 녹즙기 (믹서기) | 모든 규격 | 2,000 | 어 항 | 1 m 미만 | 3,000 | 침대받침대 | 1 인 용 | 5,000 |
| 다 림이 판 | 모든 규격 | 1,000 | | 1 m 이상 | 5,000 | | 2 인 용 | 8,000 |
| 문 갑 | 모든 규격 | 3,000 | 에 어 컨 | 66㎡ 미만 | 3,000 | 화일캐비넷 | 4단 이상 | 3,000 |
| 물탱크 (저수조) | 1 톤 용량 | 5,000 | | 66㎡ 이상 | 5,000 | | 3단 이하 | 2,000 |
| 배 기후 드 | 모든 규격 | 2,000 | | 254㎡이상 | 8,000 | 캐 비 넷 | 모든 규격 | 4,000 |
| 벽 시 계 | 소 형 | 2,000 | 오 디 오 | 소 형 | 3,000 | 컴퓨터본체 | 모든 규격 | 4,000 |
| | 중 형 | 3,000 | | 대 형 | 5,000 | 컴퓨터모니터 | 모든 규격 | 3,000 |
| | 대 형 | 5,000 | 오디오장식장 | 모든 규격 | 3,000 | 컴퓨터키보드 | 모든 규격 | 1,000 |
| 변 기 | 좌변기 (소형) | 5,000 | 옷 걸 이 | 모든 규격 | 1,000 | 탈 수 기 | 모든 규격 | 2,000 |
| | 양 변 기 | 10,000 | 욕 조 | 모든 규격 | 5,000 | 텔 레 비전 | 19인치 미만 | 3,000 |
| 보 일 러 | 20평 미만 | 3,000 | 유리 (거울) | 1 ㎡ 당 | 2,000 | | 19인치 이상 | 5,000 |
| | 20평 이상 | 5,000 | 유 모 차 | 모든 규격 | 2,000 | 텔레비젼대 | 모든 규격 | 3,000 |
| 보일러 기름탱크 | 모든 규격 | 2,000 | 이불 (담요) | 장 당 | 2,000 | 프린 터기 | 소 형 | 2,000 |
| 보 행 기 | 모든 규격 | 2,000 | 의 자 | 모든 규격 | 2,000 | | 대 형 | 3,000 |
| 복 사 기 | 모든 규격 | 10,000 | 자 전 거 | 모든 규격 | 2,000 | 피 아 노 | 모든 규격 | 15,000 |
| 비 디 오 | 모든 규격 | 2,000 | 장 농 | 120cm이상1쪽 | 15,000 | 올 겐 | 모든 규격 | 4,000 |
| 비키니옷장 | 모든 규격 | 2,000 | | 120cm미만1쪽 | 10,000 | 항 아 리 | 모든 규격 | 2,000 |
| 서 랍 장 | 5단 미만 | 2,000 | 장 식 장 | 모든 규격 | 4,000 | 화 장 대 | 모든 규격 | 3,000 |
| | 5단 이상 | 4,000 | 장 판 | 5 m 당 | 2,000 | 화 분 | 소 형 | 1,000 |
| 선 풍 기 | 모든 규격 | 2,000 | 전 기 담 요 | 3인용기준 | 2,000 | | 대 형 | 2,000 |
| | | | | | | **소 화 기** | **모든 규격** | **3,000** |

(주)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2조(생활폐기물의 수집・운반・처분 수수료의 부과・징수)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수집・운반・처분에 관한 수수료(이하 "수수료" 라 한다)의 부과・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<br>1. ~ 3. (생 략)<br>② ~ ④ (생 략) | 제12조(생활폐기물의 수집・운반・처분 수수료의 부과・징수) ① 법 제14조 제5항----------.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<br>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